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제2항).
-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.
-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(안 제5조제4항 신설).
-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-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(제21조제3항 신설).

-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(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사회보장급여 신청 간주제도의 판단 주체 명확화 등

- 안 제5조제4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청제도의 예외로서,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임.
 - 그런데 개정안은 “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”고 규정하여 있어, 문언상 사회보장급여 신청 간주 여부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. 따라서 신청 간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 신청 간주 요건 중 제1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신청 간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청 간주가 사실상 재량이 아닌 법정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청 간주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법문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5조(사회보장급여의 신청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사회보장급여의 <u>신청</u>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</u> 1.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<u>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</u> 2.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<u>확인되면,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</u>	제5조(----- <u>신청</u> <u>등</u>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하기 위하여 <u>다음 -----</u> -----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회보장급여-----</u> ----- 2. ----- ----- ----- <u>확인되면</u> ----- ----- ----- -- <u>경우로서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)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
2. 그 밖의 사항

- 안 제8조제2항 단서는 동의 서면 없이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같은 항 본문(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하는 내용)과는 내용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, 별도의 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.

[illegible]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 · 신용정보 또는 보험 정보(이하 “금융정보 등”이라 한다)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「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및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」 제32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제1 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 에게 지원대상자의 금 융정보등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단서 삭제></u> 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「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 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동의 서 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</u>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		<u>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

○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문 표현을 수정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윤 상 열)